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2

2381

제출일자: 2023. 9. 5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·운영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 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)
- 나. 상설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(안 제5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, 제7조제1항, 제7조제4항, 부칙<제14298호, 2016.12.2.> 제2조
- 2)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제1항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 · 구조문대비표: 별도첨부
- 2) 입법예고(2023. 7. 27. ~ 2023. 8. 16.): 별도의견 없음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평가: 의견반영(가족정책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포함하여"를 "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 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	제5조(위원회 구성 등) ①
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	
<u>포함하여</u> 15명 이내의 위원으로	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
구성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	④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
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	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
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	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<u>.</u>
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없 음

2. 미첩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 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첚부 사유

○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발생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공원녹지과 최성문
연 락 처	2627-1886

현 행 조 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9, 1, 1,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996호, 2018, 11, 9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,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,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친환경농업"이란 합성농약, 회학비료 및 항생·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·축산업·임업 부산물,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·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(이하 "농산물"이라 한다)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.
- 2. "친환경농산물"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.
- 3. "도시농업"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.
- 4. "도시텃밭"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, 자투리땅, 공원녹지,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. 5. "상자텃밭"이란 인공지반인 옥상,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.
- 6. "도시텃밭 운영자"란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- 제3조(기본원칙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,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, 화학비료,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 하여야 한다.
- 제4조(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시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나를 두다.

제5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금천구의회 의원
- 2. 금천구 소속 4급 공무원
- 3.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4.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5.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6.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다
-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
- 3.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4.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

- 제7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8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
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9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,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.
- 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- 2.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
- 3. 제6조제3항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함 경우
- 제10조(위원회 경비지원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11조(도시텃밭 등 지정)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, 자투리땅, 공원녹지,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제12조(상자텃밭의 보급 등)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.
-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- 제13조(도시농업의 교육)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,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처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4조(우선구매) 구청장은 도시농업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함 수 있다
- 제15조(우수사례 발굴 등)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,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16조(보조금의 지원)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·단체·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
- 2.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 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
- 3.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
- 4.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17조(준용)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관계 법령

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7. 9. 22..] [법률 제14650호, 2017. 3. 21, 일부개정]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.

제7조(도시농업협의회)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도시농업현의회(이하 "현의회"라 한다를 둔다.

-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
- 2.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
- 3. 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
- 4.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- 5.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-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- 1.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- 2.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농촌진흥청,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
- ④ 그 밖에 혐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 <법률 제14298호, 2016, 12, 2,>

제2조(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0. 3. 3.] [대통령령 제30509호, 2020. 3. 3., 타법개정]

- 제6조(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창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다.